

대 통 령 령

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.

대 통 령 문 재 인 (인)

2019년31월 19일

국 무 총 리 이 낙 연

국 무 위 원

교육부장관

유 은 해

●대통령령 제29623호

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
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의8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 단서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, “범위안에서”를 “범위에서”로, “한하여”를 “한정하여”로, “연장”을 “연기”로 한다.

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[「국가인권위원회법」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등 성(性) 관련 비위만을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30일]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해야 한다.

제24조의8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 절차의 진행이 법 제66조의3에 따라 중지된 경우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 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.

제29조 중 “법 제74조제2항”을 “법 제74조제1항 및 제3항”으로 한다.

별표 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개별기준

위반 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 (단위: 만원)		
		1회 위반	2회 위반	3회 이상 위반
가.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·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법 제32조의2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보고해야 할 사항을 거짓으로 또는 누락하여 보고한 때	법 제74조제3항	100	300	500
나.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) 법 제54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관할청의 해임 또는 징계 요구를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74조제1항 제1호	300	600	1,000

2) 법 제54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관할청의 해임 요구를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74조제1항 제2호	300	600	1,000
3) 법 제6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재심의를 요구하지 않은 경우	법 제74조제1항 제3호	300	600	1,000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9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징계의결의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등) ① 이 영 시행 전에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24조의8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24조의8 본문에 따른다.

② 제24조의8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관할청이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교원의 해임 또는 징계요구를 하는 경우 그 요구를 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고, 특별한 사유 없이 그 해임 또는 징계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사립학교법」이 개정(법률 제15954호, 2018. 12. 18. 공포, 2019. 3. 19. 시행)됨에 따라,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관할청의 그 해임 또는 징계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1회 위반 시 300만원, 2회 위반 시 600만원, 3회 이상 위반 시 1,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,

성희롱 행위 등 성(性) 관련 비위만을 징계사유로 하는 징계의결의 경우에는 그 징계의결 기한을 징계의결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하여 성 관련 비위 행위자에 대한 신속한 징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<법제처 제공>

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.

대통령 문 재 인 인

2019년 3월 19일

국무총리 이 낙 연

국무위원

교육부장관

유 은 혜

●대통령령 제29624호

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

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의4를 제4장의2의 제19조의5로 하고, 제1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